

인천지역 華商의 仁川海關 습격사건

이헌주(국사편찬위원회)

1. 머리말
2. 인천 거류 華商들의 인천해관 습격사건
 - 1) 인천해관 습격사건의 진행과정
 - 2) 사건의 배경과 성격
3. 사건의 처리 과정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적용
4. 맺음말

1. 머리말

1886년 1월 인천해관의 서양인 海關員과 조선인 巡監이 청국 군함을 타고 온 華商 呂裕生을 홍삼 밀수혐의로 연행하여 심문하다가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십 명의 華商들이 해관에 난입하여 해관원들을 구타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이 주재국의 국가기관을 습격하여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었고,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에 대해 사실상의 식민지 지배를 추구했던 청국 정부와 그 위세에 가탁한 청국인들이 조선에서 자행했던 횡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¹⁾

이 사건에 대해서는 청국이 조선해관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통제함으로써 조선해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이를 기화로 한 조선해관에 대한 청국인의 만연한 횡포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략히 소개한다거나²⁾, 1882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체결 이후 청국 측이 제2조의 常務委員裁判權이라는 변형된 領事裁判權을 행사하였던 실상이 잘 드러난 대표적 사건의 하나로 개략적으로 소개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 사건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

본 논문에서는 1886년 발생한 개항장 인천에 거류하는 華商들의 조선해관 습격사건의 내용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사건의 발생 배경과 성격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무역장정에서 금지되어 있는 화상에 의한 홍삼 밀무역이 이뤄졌고, 이들이 밀수품의 수송 수단으로 민간 선박이 아닌 청국 군함을 이용함으로써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엮

1) 朴奉植은 1885년 10월부터 1889년 11월까지 朝鮮海關 總稅務司를 지냈던 메릴(H. F. Merrill, 墨賢理)의 書簡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다루었는데 청국해관 총세무사 하트(Robert Hart, 赫德)에게 보낸 1886년 2월 3일자 편지에 나타난 인천해관사건에 대한 메릴의 시각과 역할을 소개한 바 있다(박봉식, 1969, 「메릴 書簡」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365~367쪽).

2) 具仙姬, 1999,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해안, 209~210쪽.

3) 정태섭·한성민, 2007,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5~27쪽.

혀있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둘러싼 소송에서 무역장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양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려 했는지 주목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은 조선과 청국이 세계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만국공법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양국인 간에 벌어진 분쟁과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조선을 ‘屬邦’이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던 청국이 양국 간의 분규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그러한 입장이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인천 거류 華商들의 인천해관 습격사건

1) 인천해관 습격사건의 진행과정

1886년 1월 25일(음력 1885년 12월 21일) 인천해관의 서양인 해관원과 조선인 巡監인李文燮이 인삼 등 화물 밀수를 조사하던 중 申時에 미삼 7근을 소지한 華商을 붙잡았고, 酉時에는 짐을 맨 채 의심스럽게 해관 뒤편으로 지나는 화상 呂裕生을 붙들어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가 조사를 거부하며 순감을 구타하고 서양인 해관원과 힐난하며 다투자 해관으로 끌고 가 심문하였다. 이 사실은 곧 인천 거류 화상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체포된 화상이 서양인 해관원에게 두들겨 맞아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화상 삼십여 명이 인천해관에 난입하여 해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관련자들을 끌어내어 구타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⁴⁾ 이튿날에도 화상 여러 사람이 모여 搜驗所에 투석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건물을 무너뜨린 후 해관 수호를 위해 理事署에서 보내준 병력과 대치하기도 하였다.⁵⁾

인천해관 습격을 주도한 것은 인천의 청국상업회의소 會頭 林松唐이었는데, 그는 평소 인천해관의 밀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던 청국 상인들을 이끌고 해관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해관 직원들을 구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진정시키려 했던 해관세무사 스트리플링(A. B. Stripling, 薛必林)도 부상당하였다. 그 이후 해관에서는 앞서 진행하지 못했던 밀수조사를 청국 군함 鎮海號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군함의 회계책임자 陳日昇에 대한 몸수색을 단행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진일승의 주도 아래 또 다시 청국 상인들이 해관을 습격하고 해안에 있는 朝鮮巡監所를 파괴하였다.⁶⁾ 이에 스트리플링은 인천에 정박 중이던 영국 군함에 지원 요청을 하여 청국 상인들을 진압하고, 통리아문에 보고하였다.⁷⁾

2) 사건의 배경과 성격

청국 측은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독일인 세관원 피셀(F. H. Mörsel, 馬士)이 조사과정

4) 『駐朝鮮使館檔』, 袁世凱 : 訴訟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31~35쪽 ; 『統署日記』 1, 高宗22년 12월 22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권3).

5) 『駐朝鮮使館檔』, 袁世凱 : 訴訟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33쪽.

6) 정대섭·한성민, 2007, 앞의 논문, 25~26쪽.

7) 『統署日記』 1, 高宗22년 12월 22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 권3).

서 華商에게 가한 苛虐 행위를 문제 삼으며 이에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였다.⁸⁾ 실제로 사건 당시 체포된 화상이 해관원에게 두들겨 맞아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점을 보면 조사과정의 가학행위가 화상들을 자극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음을 분명해 보인다.

한편 청국측은 조선해관이 종종 일을 공평하지 않게 처리하며 평소에 화상을 억누르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상들의 官府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⁹⁾

원세개의 비호와 청상들의 조선 공권력에 대한 경시에 따른 청국인에 의한 밀무역 확대 경향과도 관련

3. 사건의 처리 과정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적용

조선 해관에서는 화상들의 해관 공격사건과 공공기관 기물 파손, 불법으로 홍삼을 무역한 사안, 화상의 군함 탑승과 홍삼 밀매, 탈세 등을 들어 해당 화상을 고소하였다. 이에 해당 화상들은 군함 탑승은 공사관에 필요한 食物과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고, 인삼 등은 소량을 약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세무사가 강제로 조약의 율을 적용하는 사례라고 반박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군함의 왕래를 조사하는 것은 만무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조례에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¹⁰⁾

조선 정부는 袁世凱에게 사건의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원세개는 청국 상인들의 인삼 밀수와 해관 습격보다는 오히려 해관에 의한 청국 상인들의 체포를 더욱 문제시하였다. 그는 해관이 체포권이 없음에도 청국상인들을 불법 체포한 것이라며 해당 순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해관을 습격한 청국 상인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¹⁾ 조선정부의 외무독관 김윤식은 적반하장격인 원세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해관원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였다.¹²⁾ 조선의 국가기관을 습격한 청국인들을 직접적으로 비호하는 원세개의 횡포는 해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조선의 주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였고, 이 같은 횡포는 당시 청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외국인 고용관리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¹³⁾

조선해관 총세무사 메릴은 인천해관사건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직접 이홍장에게 전보를 보내어 알렸다. 메릴의 보고에 대해 이홍장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

8) 『駐朝鮮使館檔』, 袁世凱 : 訴訟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照會迅速查明海關扞手毆傷華商見覆事, 53쪽. 피셀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1월초 종종 불법행위를 벌인다는 이유로 조사해 달라는 華商의 투서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조선해관에서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시점, 제보자의 이름 등이 없어 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각사등록』, 總關來申1, 仁川海關 扞手馬士의 불법을 조사, 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申呈 제 19호, 1885년 12월 10일).

9) 『駐朝鮮使館檔』, 袁世凱 : 訴訟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43~45쪽.

10) 『駐朝鮮使館檔』, 袁世凱 : 訴訟 32, 仁川海關華商滋事卷, 43~45쪽.

11) 『淸案』 1, #468. 同上件閱悉 및 起關巡監處罰에 關한 回答, 高宗22년 12월 26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외교문서 권8).

12) 총세무사 메릴은 이홍장에게 올린 보고에서 청 官民이 모두 조선의 관헌이나 체도를 멸시하고 있고 조선 측은 너무 저자세라며 외무독관 김윤식의 심한 친척적인 태도로 인하여 오히려 청국에 해가 되고 있다고까지 하였다(박봉식, 1969, 앞의 글, 366~367쪽).

13) 정태섭·한성민, 2007, 앞의 논문, 26쪽.

자 메릴은 “청국의 관민이 모두 조선의 官憲이나 制度를 너무 멸시하고 있고, 또 조선측은 너무 저자세라서 이들이 모두 우리의 목적달성에 이롭다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군함의 밀수에 대해서도 “수병들이 왕래하면서 인삼을 조금씩 가지고 다니는 일에 관여할 생각은 본래 없었으나, 이 군함에는 상당수의 여객을 싣고 다니고 이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니 이들에게마저 특권을 줄 수는 없고 군함의 대표자는 이들에 대한 검색마저 거부할 권리는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홍장의 결심을 촉구하였다.¹⁴⁾

메릴의 보고를 받은 이홍장은 원세개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따라 원세개도 어쩔 수 없이 입장을 바꾸어 해관 습격을 주도한 청국 상인들을 처벌하였다.¹⁵⁾ 하지만 당시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林松唐 등 주모자 6명의 본국 송환과 해관의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금 80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청국 측의 해관 순감에 대한 처벌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는 “法理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단속으로 많은 사람을 분노케 했다”는 이유로 呂裕生을 해관으로 引致했던 순감 2명을 처벌하였다.¹⁶⁾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은 외국인이 주재국의 국가기관을 습격해 국가 통치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중대한 사건이었고, 당시 청국 정부와 청국인들이 조선에서 자행한 횡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하지만 무역장정의 제2조에 의해 조선측은 관련자들의 재판과 처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고, 가능한 것은 단지 범인에 대한 처벌 요청뿐이었다. 반면 청국 측은 분쟁의 성격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내려 자국민을 보호하였다.

14) 박봉식, 1969, 앞의 글, 365~366쪽

15) 이홍장의 인천해관사건에 대한 입장이 조선정부에 전달된 것은 1886년 3월 20일의 일이다(『淸案』 1, #490. 仁川淸商의 海關哄鬧事件에 대한 李鴻章의 札飭傳達, 고종23년 2월 15일(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의교문서 권8)).

16) 정태섭·한성민, 2007, 앞의 논문, 27쪽.